

농지관리기금 운용실적보고서

제1권 요약

2000. 4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요약)

총괄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장 나승렬

작성책임자 : 각 지표별 책임자 참조

연 락 처 : 농림부 농지과(☎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0343-420-3581)

차 례

I. 일반현황	1
II. 종합평가	15
III. 사업운영평가	25
1. 주요사업 실적	
가. 영농규모화사업	27
나. 농지조성사업	35
다. 농지정보화사업	43
라. 농지관리위원지원사업	53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61
바. 기타 사업	
1) 조성토지매각관리	69
2) 진흥지역밖자원조사	75
3) 농지이용증진사업	81
2.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87
가. 농지관리계정	89
나. 농지조성계정	91
IV. 관리조직평가	93
V. 자산관리평가	105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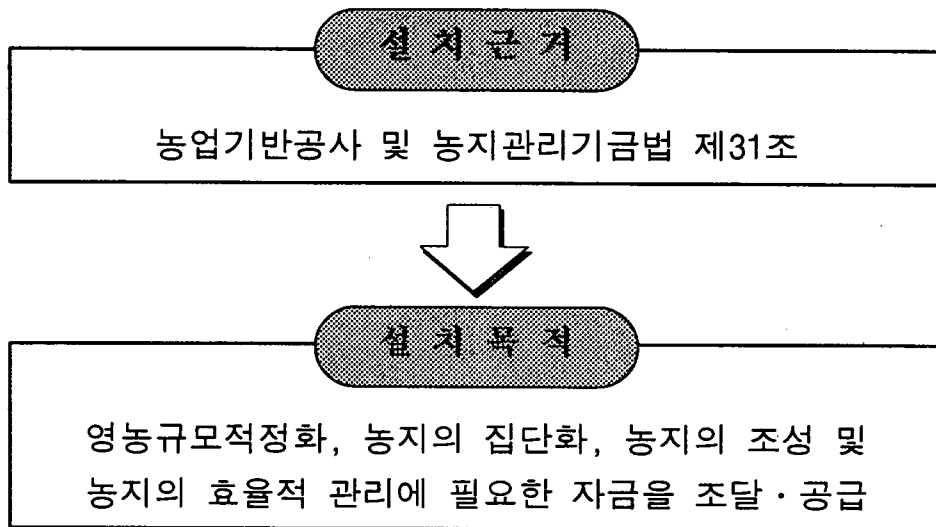
- | | |
|--------------------------|---|
| 1. 농지관리기금 개요 | 3 |
| 2. 농지관리기금 조달·운영 현황 | 8 |

여 백

I. 일 반 현 황

1. 농지관리기금 개요

가. 설치근거 및 목적



나. 연 혁

- '81. 3. 7 : 농지기금 설치(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체농지조성비 징수 및 농지조성사업 추진
- '86. 3. 5 : 농어촌발전종합대책발표(농지구입자금지원 약속)
 - '88년부터 농어촌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
- '90. 4. 7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농지관리기금 설치
 - 농지관리계정 :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중 농지구입자금
관련 채권·채무 인수
 - 농지조성계정 : 농지기금 흡수
- '90. 7. 2 : 농어촌진흥공사 설립, 법 시행
 - 농지관리기금의 위탁관리 및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시행
- '99. 2. 5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구분	재원	용도
농지관리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금 ○ 재특회계등으로 부터의 차입금 ○ 국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 농지임대차사업 자금의 용자 ○ 농지교환분합과 집단환지 청산금의 용자
농지조성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비 납입금 ○ 조성토지 매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자금의 투자 ○ 농지재개발, 조사연구사업 등의 용자 및 보조 등

라. 기금사업의 내용

□ 용자사업

- 대상사업 : 영농규모화사업(농지관리계정), 농지재개발(농지조성계정)
- 용자조건

계정별	사업별	대출금리	상환기간		비고
			거치	상환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사업	4.5%	-	20년	
	○ 농지임대차사업	-	-	5~7년	
	○ 농지교환분합사업	4.5%	-	10년	
농지조성계정	○ 농지재개발사업	3.0%	2년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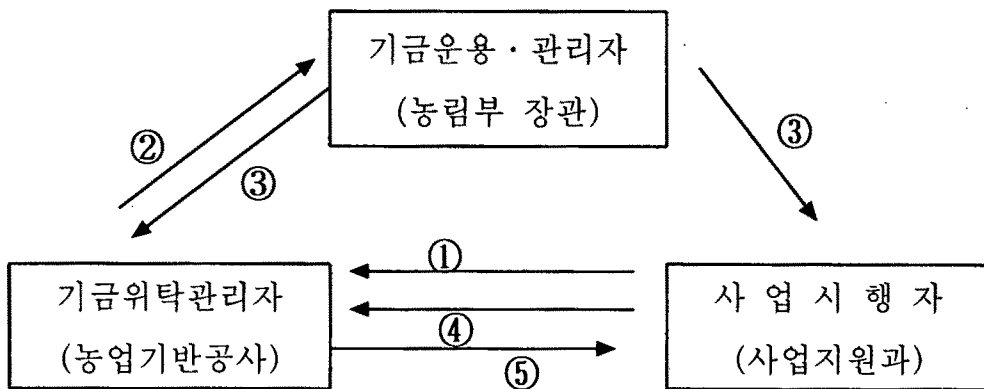
□ 투자사업(농지조성계정)

- 대상사업 : 대체농지조성사업(서남해안 간척, 대단위농업개발, 유희지개발)

□ 보조사업(농지조성계정)

- 농지의 제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시험·연구·홍보
- 농지재개발 또는 농지조성을 위한 예정지 조사·기본조사·시험·연구와 환경영향평가 등

마. 기금사업 지원체계



※ 범례

- ① 사업시행자는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사업계획 및 월별자금요구서 제출
-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운용관리자에게 월별수입·지출계획서 제출
- ③ 기금운용관리자는 기금위탁관리자와 사업지원과에 월별·분기별 자금집행계획 통보
- ④ 자금집행계획을 통보 받은 사업시행자는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자금교부 신청
- ⑤ 기금위탁관리자는 자금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집행계획 통보내역에 따른 자금을 교부

바. 기금의 회계기관

□ 기금의 회계기관(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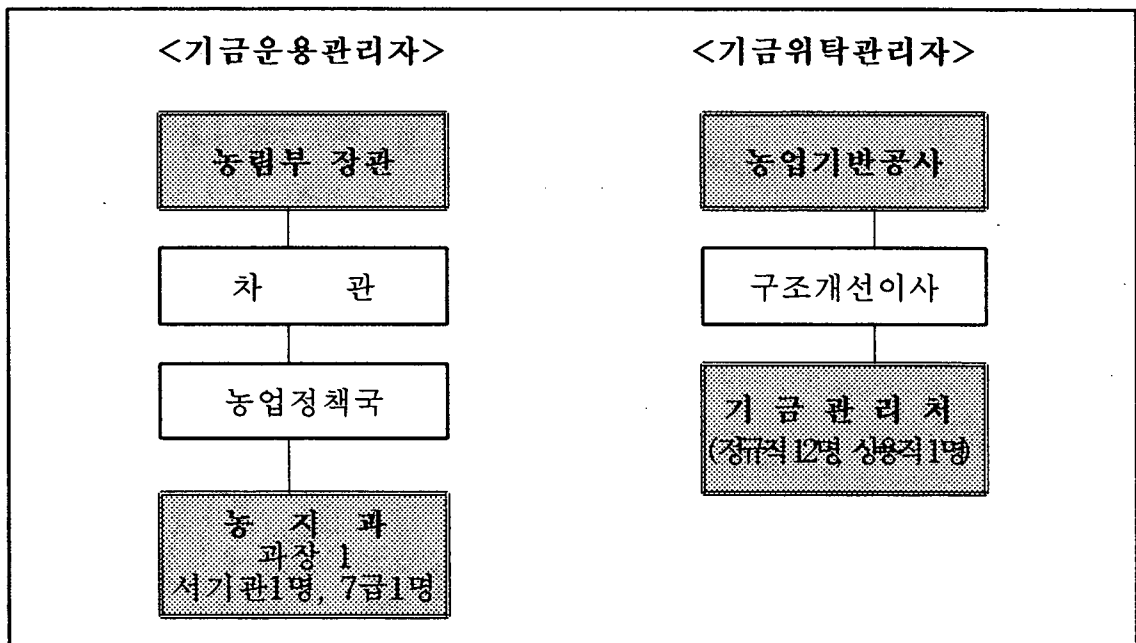
기금운용 관리자 (농림부 장관)	기금위탁 관리자 (농업기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출납명령관 : 농지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출납담당임원 : 출납담당 이사 ○ 기금출납원 :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장

□ 기금계정의 설치

- 기금운용관리자 : 한국은행에 기금계정 설치(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
- 기금위탁관리자 : 농·축협에 기금계정 설치(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

사. 기금관리 조직·인원 및 위탁업무

□ 조직 구성 및 인원



□ 위탁업무내용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5조

-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 농지조성비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용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
- 기타 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아. 재무현황

□ 대차대조표

('99.12.31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관리계정	조성계정	비 고
I. 유동자산	2,144,528	327,200	1,817,328	◦ 영농규모화사업 대여금 - 단기 : 245,719 - 장기 : 2,149,309
II. 고정자산	2,258,999	2,149,309	109,690	
자산 계(I+II)	4,403,527	2,476,509	1,927,018	계 : 2,395,028
III. 유동부채	283,563	281,730	1,833	◦ 영농규모화사업 차입금 - 단기 : 163,392 - 장기 : 1,843,823
IV. 고정부채	1,843,823	1,843,823	-	
부채 계(A=III+IV)	2,127,386	2,125,553	1,833	계 : 2,007,215
V. 자본금	3,073,537	1,164,441	1,909,096	※ 차입선별 차입금 내역 - 재특 : 716,394 - 국채 : 1,290,821
VI. 자본잉여금	9,504	-	9,504	
VII. 이익잉여금	△806,900	△813,485	6,585	
자본계(B=V+VI+VII)	2,276,141	350,956	1,925,185	
부채및자본계(A+B)	4,403,527	2,476,509	1,927,018	계 : 2,007,215

□ 손익계산서

('99.1.1~'99.12.31)

(단위 : 백만원)

과 목	계	관리계정	조성계정	비 고
● 매출액	161,951	61,154	100,797	◦ 대여금이자, 조성토지매각대
● 매출원가	369,445	226,926	142,519	◦ 차입금이자, 토지원가
<매출총이익>	△207,494	165,772	△41,722	
● 판매와 일반관리비	716	-	716	◦ 기금운용관리비
<영업이익>	△208,210	△165,772	△42,438	
● 영업외 손익	1,326	-	1,326	◦ 일시임대경작료수입 등
● 특별손익	△2,058	△2,058	-	◦ 임차료 재해감면
<당기순이익>	△208,942	△167,830	△41,112	

2. 농지관리기금 조달·운용 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98까지	'99년도		누계	2000계획	
				계획	실적			
계 (A+B)			7,276,649	737,163	790,545	8,007,130	931,138	
농지관리계정	조달	○ 정부출연금	1,124,441	40,000	40,000	1,164,441	40,000	
		○ 재특차입금	791,191			791,191	-	
		○ 국채관리기금	2,042,750	158,546	158,471	2,201,221	340,038	
		○ 용자금회수등	1,226,137	301,513	318,071	1,544,208	327,081	
		○ 전 기 이 월		16,153	16,153		26,671	
	소 계 (A)			5,184,519	516,212	532,695	5,701,061	733,790
	운용	○ 규모화사업비	3,308,389	248,042	248,042	3,556,431	243,372	
		- 농지매매자금	2,196,663	125,715	125,715	2,322,378	123,219	
		- 농지구입자금	686,907			686,907	-	
		- 교환분합자금	39,813	5,802	5,802	45,615	5,156	
- 임대차자금		385,006	116,525	116,525	501,531	114,997		
○ 차입금상환등	1,676,813	197,543	197,541	1,874,354	455,688			
○ 사업수수료등	183,164	44,555	44,541	227,705	34,730			
○ 차 기 이 월	16,153	26,072	42,571	42,571	-			
농지조성계정	조달	○ 농지조성비	1,720,621	147,400	174,948	1,895,569	154,700	
		○ 조성토지매각대	61,873	8,651	15,597	77,470	5,641	
		○ 예탁금 회수	115,000	-	-	115,000	-	
		○ 수입이자 등	194,636	20,989	23,394	218,030	26,885	
		○ 전 기 이 월		43,911	43,911		10,122	
	소 계 (B)			2,092,130	220,951	257,850	2,306,069	197,348
	운용	○ 농지조성사업비	1,756,380	202,932	202,883	1,959,263	188,619	
		○ 농지재개발	10,366	2,762	2,762	13,128	3,200	
		○ 기본조사비등	60,300	4,386	4,287	64,587	4,022	
		○ 기금관리비	6,173	713	713	6,886	749	
○ 재정예탁		215,000	-	-	215,000	-		
○ 차 기 이 월	43,911	10,158	47,205	47,205	758			

나. 농지관리계정

□ 조달·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3까지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누계	
조달	1.정부출연금	1,044,441				80,000	400	1,164,441	
	2.장기차입금	747,700	341,866	440,522	527,378	585,782	190,693	158,471	2,992,412
	○재특차입금	45,000	134,166	162,576	213,641	235,808			791,191
	○국채관리기금		207,700	277,946	313,737	349,974	190,693	158,471	1,498,521
	○농지채권	702,700							702,700
달	3.융자금회수등	204,975	141,834	167,232	195,260	242,415	274,421	318,071	1,544,208
	○융자원금회수	159,140	97,002	113,609	142,050	179,212	209,655	254,167	1,154,835
	○융자이자회수	40,219	41,381	48,231	51,584	58,423	59,259	61,089	360,186
	○기타수입등	5,616	3,451	5,392	1,626	4,780	5,507	2,815	29,187
5.전 기 이 월		18,995	44,514	23,388	25,983	59,336	16,153	-	
소 계(A)	1,997,116	502,695	652,268	746,026	854,180	604,450	532,695	5,701,061	
운용	1.규모화사업비	1,745,362	238,240	280,000	336,540	348,398	359,849	248,042	3,556,431
	○농지매매자금	1,040,243	215,240	235,000	266,500	211,200	228,480	125,715	2,322,378
	○농지구입자금	686,907							686,907
	○교환분합자금	11,151	3,000	5,000	5,040	7,728	7,894	5,802	45,615
	○임대차자금	7,061	20,000	40,000	65,000	129,470	123,475	116,525	501,531
	2.원리금상환등	231,823	193,847	317,916	351,170	404,464	177,593	197,541	1,874,354
	○채권상환	216,484	186,683	304,545	307,147				1,014,859
	- 원 금	150,000	127,700	210,000	215,000				702,700
	- 이 자	66,484	58,983	94,545	92,147				312,159
	○재특상환	15,339	7,164	13,371	27,839	45,786	73,929	75,422	258,850
	- 원 금	7,500	2,500	2,500	2,500	9,955	18,986	30,857	74,798
	- 이 자	7,839	4,664	10,871	25,339	35,831	54,943	44,565	184,052
	○국채상환				16,184	358,678	103,664	122,119	600,645
	- 원 금					207,700			207,700
	- 이 자				16,184	150,978	103,664	122,119	392,945
3.규모화수수료등	936	26,094	30,964	32,333	41,982	50,855	44,541	227,705	
- 규모화수수료		26,094	30,573	30,792	40,217	49,424	42,909	220,009	
- 채권발행비	225							225	
- 제세공과금	711		391	1,541	1,765	1,431	1,632	7,471	
4.차 기 이 월	18,995	44,514	23,388	25,983	59,336	16,153	42,571	42,571	

□ 조달·운용 잔액현황

(단위 : 백만원)

조달		운용		잔액	
구분	'99까지	구분	'99까지	구분	'99까지
○ 정부출연금	1,164,441			○ 정부출연금	1,164,441
○ 차입금	2,992,412	○ 차입금원금상환	985,198	○ 차입금잔액	2,007,214
- 국채	1,498,521	- 국채(3,5,7년)	207,700	- 국채	1,290,821
- 재특	791,191	- 재특(2년거치18년)	74,798	- 재특	716,393
- 농지채권	702,700	- 채권(3년)	702,700	- 농지채권	
소 계	4,156,853	소 계	985,198	소 계	3,171,655
○ 지원원금회수	1,154,835	○ 규모화사업비	3,556,431	○ 규모화잔액	2,395,028
- 농지매매	584,463	- 농지매매	2,322,378	- 농지매매	1,736,474
- 농지구입	400,926	- 농지구입	686,907	- 농지구입	285,981
- 교환분합	21,627	- 교환분합	45,615	- 교환분합	23,985
- 임대차	147,819	- 임대차	501,531	- 임대차	348,588
				○ 재해감면	(6,568)
소 계	1,154,835	소 계	3,556,431	소 계	2,401,596
○ 지원이자(3%)	360,186	○ 차입금이자상환	889,156		
- 농지매매	242,670	- 국채	392,945		
- 농지구입	114,479	- 재특	184,052		
- 교환분합	1,862	- 채권	312,159		
- 임대차	1,175				
○ 예치이자	29,187	○ 수수료등	227,705		
- 기금예치	18,045	- 수수료	220,009		
- 공사예치	9,356	- 채권발행비	225		
- 기타수입	1,786	- 농특세등	7,471		
		○ 시재금	42,571		
소 계	389,373	소 계	1,159,432		
합 계	5,701,061	합 계	5,701,061		

※ ()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융자액의 감소

다. 농지조성계정

□ 조달·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93까지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누계
조달	1.농지조성비	807,901	145,108	197,491	200,467	260,929	108,725	174,948	1,895,569
	2.조성토지매각대	12,847	5,463	3,225	2,703	10,542	27,093	15,597	77,470
	3.운용수익등	85,995	10,216	17,298	22,196	25,408	33,523	23,394	218,030
	- 매각대이자	1,825	501	632	1,399	1,620	2,609	10,798	19,383
	- 농지재개발원금							470	470
	- 농지재개발이자					28	179	311	518
	- 위탁경작료	934	161	279	680	761	1,108	1,675	5,598
	- 채특이자	5,703	5,750	5,750	5,765	5,732	6,750	6,000	41,451
	- 예치이자등	77,533	3,804	10,637	14,352	17,267	22,877	4,140	150,610
	4.예탁금회수					100,000	15,000		
5.전 기 이 월		20,008	52,311	80,321	79,764	154,430	154,430		-
소 계(A)		906,743	180,795	270,325	305,687	476,643	338,771	257,850	2,306,069
운용	1.농지조성사업	734,509	123,491	184,787	219,546	211,430	282,617	202,883	1,959,263
	○ 서남해안	648,860	78,991	130,787	142,000	143,180	129,037	109,952	1,382,807
	○ 대 단 위	85,649	44,500	54,000	77,546	67,000	152,000	90,000	570,695
	○ 폐염전개발					1,250	1,580	2,931	5,761
	2.농지재개발				939	5,027	4,400	2,762	13,128
	3.농지전산화	5,615	977	1,648	1,631	2,491	4,411	1,588	18,361
	4.농지제도이용 보전연구등	9,323	1,744	848	712	1,001	881	1,553	16,062
	5.기본 조사비	19,439	1,684	1,800	1,922	149	(43)	-	25,037
	6.매각관리비	226	12	353	454	1,236	1,700	1,146	5,127
	7.기금관리비	2,623	576	568	719	879	808	713	6,886
8.채특예탁	115,000				100,000	-	-	215,000	
9.차기 이월	20,008	52,311	80,321	79,764	154,430	43,911	47,205	47,205	

□ 지원 현황

○ 농지조성사업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구수	농지조성 면적(ha)	기 금 투 자 액			
			계	'99까지	2000계획	2000이후
계	53	73,993	3,050,499	1,959,238	188,619	902,642
○ 준 공	36	13,865	428,250	428,250		
- 서남해안	33	4,979	284,217	284,217		
- 폐염전	1	40	2,695	2,695		
- 대단위	2	8,846	141,338	141,338		
○ 시 행 중	17	60,128	2,622,249	1,530,988	188,619	902,642
- 서남해안	12	19,054	2,096,059	1,098,590	108,000	889,469
- 유희지	2	274	21,358	3,066	5,119	13,173
- 대단위	3	40,800	504,832	429,332	75,500	-

○ 농지재개발 용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96실적	'97실적	'98실적	'99실적	2000계획
계	13,328	939	5,027	4,400	2,762	3,200
○ 수락(충남논산)	4,000	939	2,689	372	-	-
○ 상송(경북포항)	3,458	-	356	940	2,162	-
○ 대곡(전남화순)	2,440	-	947	1,493	-	-
○ 신계(충북진천)	2,430	-	1,035	1,395	-	-
○ 가리내(강원횡성)	1,000	-	-	200	600	3,200

○ 농지정보화 및 조사·연구·교육 등 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99까지				2000계획 (C)
		'97이전	'98실적	'99실적	계	
계		53,265	7,035	4,287	64,587	4,022
○ 농지정보화		12,363	4,410	1,588	18,361	1,366
	- 농지전산화	11,251	1,296	779	13,326	1,066
	- 상세도및지번도	1,112	3,114	809	5,035	300
○ 농지제도 보전교육 홍보 등		13,627	882	1,553	16,062	1,495
	- 농지관리위원교육	3,272	446	436	4,154	447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350	-	97	447	100
	- 농지이용증진		250	-	250	
	- 불법농지신고 포상금지급			1	1	20
	- 농지관리위원지원	-	-	923	923	928
	- 국토이용방안연구		75	64	139	
	- 농지제도의견수렴		111		111	
	- 농지법발간배부			32	32	
	- ('81~'96까지지원)	(10,005)			(10,005)	
○ 기본조사비		27,275	1,743	1,146	30,164	1,161
	- 간척적지조사등	24,964	73	-	25,037	100
	- 매각관리비	2,311	1,670	1,146	5,127	1,061

※ ()내서는 농지제도 홍보 등 '97이전 보조사업비 지출임

여 백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II. 종합평가

1. 1	기금의 필요성	17
1. 2	기금의 안정성	19
1. 3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21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1. 기금의 환경 적응성

□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연계 추진

농업정책의 변화		농지관리기금사업의 변화
○ 농어촌발전종합대책('89. 4) - 농어촌구조개선(영농규모화사업) 추진을 위한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 농지관리기금설치('90. 7) - 농지관리계정 및 농지 조성계정 구분 설치
○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7) - 42조 투자계획('92~2001)수립 · 영농규모화사업 : 5조원 · 농업생산기반정비 : 9조4천억원	⇒	○ 농지전용부담금징수('92) -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 병행 실시
○ UR협상 타결('93. 12) - 쌀 「개도국 유지」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 조치(2004년 재협상) - MMA(최소시장접근) : '95년 1% → '99년 2% → 2004년 4%(20만5천톤)		
○ 쌀산업발전 종합대책('96. 6) - 2004까지 쌀전업농(5~20ha규모) 10만호, 법인경영체(50~100ha) 2000개소 육성	⇒	○ 쌀전업농 육성계획수정('96) - 영농규모화사업예산확대 · '95년 2,800억원 → '96년 3,365억원 → '97년 3,484억원
○ 45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98. 10) - '99 ~ 2004까지 농업부문 45조 · 영농규모화사업 연평균 3,500억원 수준	⇒	○ 영농규모화사업방식 전환 - 소유개념에서 이용개념 - 경자유전에서 농업경영 규모 확대

□ 농업정책의 변화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여 효과

- 농어촌구조개선 실현으로 농가 경영규모의 확대
 - 영농규모화사업
 - 쌀 전업농 : (지원전) 2.12ha → (지원후) 3.47ha(1.6배)
 - '92~'98까지 22,524억원 투입 60,607ha 유동화 실현
 - <경제적 측면>
 - 쌀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생산비 5.2% 절감
 - 지원농지의 82%가 기존농지와 집단화로 농업경영 효율성 제고
 - <정책효과 측면>
 - 농정방향과 일치, 정책목표의 적합성, 정책집행기관의 적합성, 정책선택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서남해안 간척·대단위종합개발 등 농지조성사업의 효과

<직접효과>

- 국토확장 및 농경지 확대에 토지 창출 : 총 74천ha 조성
- 기계화 영농과 우량농지 확보로 농가 소득향상 및 식량 자급기반 구축

<간접효과>

- 담수화에 의한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수자원 확보로 물부족 사태에 적극 대처
- 수해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 고용증대 효과 등

2. 기금형태 유지의 적합성 및 기금의 차별성

□ 농지관리기금사업의 기금형태 유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농지관리계정>

-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 추진
 - 영농규모화사업은 장기간(20년)에 걸친 사업으로 『사업기간』에 맞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기금형태 유지가 불가피함.
 - 안정적 재원확보로 농업인들의 중장기적인 영농규모사업 계획수립 가능
- 정부출연금, 재특차입금 이외에 고금리의 국채관리기금 활용 또는 농업인들의 융자상환금 재투자등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재원의 운용관리 필요

<농지조성계정>

- 농지잠식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의 확보
 - 사업목적과 사업비 재원이 『기금』 형태로 함이 타당
 - 법률상 농지조성비는 부과 목적외 사용 불가(법정부담금)

□ 타 예산과 다른 농지관리기금만의 특징(차별성)

- 영농규모사업 목표량 달성에 따른 일반회계 규모확대 억제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특정자금(융자상환금 재투자)의 운용 필요
- 농지전용에 따라 준조세 성격의 농지조성비를 징수하여 대체농지조성사업에 활용

□ 농지관리기금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영농규모화사업을 기금으로 시행하여 정부의 45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
-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의 필요
 - 식량안보차원의 농지조성에 농지관리기금이 절대적 영향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1. 기금조성 재원의 합목적성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의 종류 및 용도의 법정화

- 근거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34조
- 조성재원의 종류
 - 농지관리계정 : 정부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채발행기금차입, 영농규모화사업 융자원리금 회수, 기타이자수입
 - 농지조성계정 : 농지조성비 · 조성토지매각대회수, 예탁금회수, 기타이자수입
- 조성재원의 용도
 - 농지관리계정 :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등 영농규모화사업
 - 농지조성계정 : 대체농지조성사업, 농지의 조성 · 이용 · 보전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등

□ 농지관리기금 조성재원 규모 및 향후 조성 계획

- 기초성재원('99까지) : 총 80,071억원
 - 농지관리계정 : 57,011억원, - 농지조성계정 : 23,060억원
- 향후 재원조성 계획(2000 ~ 2004까지) : 총 63,987억원
 - 농지관리계정 : 51,952억원(2001년 이후 연간 1,000억원 정부출연 가정)
 - 농지조성계정 : 12,035억원

□ 농지관리기금 운용의 적합성

- 관리계정 : 정부출연금 및 국채관리기금등으로 기금재원을 마련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을 장기 융자하고 융자원리금을 회수하여 재융자 함으로써 사업성과 실현
- 조성계정 : 농지전용에 따라 훼손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 하기 위하여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징수하여 간척사업등 농지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 실현

2. 수요예측등 장기전망에 근거한 기금재원의 확보등 안정화 노력

□ 농지관리기금 수요와 조성재원 예측체계의 합리성

- 중장기 농업정책 및 정부의 재정운용 여건을 반영
- 기금설치 목적사업 수요예측
- 5개년 기금운용 계획대 실적치 분석
 - 농지관리기금 중장기 전망을 위한 자체 통합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정확한 예측
 - 기금사업시행자및 사업시행인가권자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5개년 평균 계획대 실적을 99% 확보
- 농지관리기금 재원조성 효율적 추진
 - 일반회계 출연금 확보
 - 대체농지조성비 안정적 확보
 - 조성토지매각대 효율적 징수
 - 기타 재원조성 합리적 추진

□ 농지관리기금의 수요와 장기전망에 근거한 재원조성의 안정화 노력

- 정부 일반회계의 농지관리기금 출연의 지속적 확보
 - 정부출연금 매회계연도 마다 1,000억원 이상 예산반영 강력추진
 - '94 ~ '97까지 중단되었던 출연금 '98예산 800억원 확보
 - '99 및 2000년도 : 각 400억원씩 출연
 - 매년 구조적 결손수준(2,000억원) 예산 요구
-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원조성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방안 추진
 - 농지관리계정의 탄력적 운영
 - 『농지조성계정 일시차입제도』 운영으로 기금운용의 탄력성 제고
 - 농지조성계정은 조성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용계획 수립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 농지관리기금 통합재정 수지분석을 통한 기금재원의 안정화 노력
 - 농지관리계정 : 정책적 지원금리 구조차로 결손 → 정부출연 지속적 요구
 - 농지조성계정 : 조성재원 범위의 사업시행으로 기금건실화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0343-420-3581)

기금의 경영개선 노력

1.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금발전 및 개선노력

- 2004년 WTO 재협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책
 - 「45조 농업·농촌투융자실천계획」의 수립·확정으로 농지관리 기금의 지원
 - 농지관리기금 목적사업 투자액 : 34,482억원
 - 농지관리계정 : 20,341억원
 - 농지조성계정 : 14,141억원(농지조성비징수 추정액)
- 환경변화에 맞춰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반 규정의 개정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개정으로 기금의 체계적 관리
 - '90 ~ '99까지 9회에 걸쳐 개정
 - 「조성토지매각규정」 제·개정으로 조성된 농지의 효율적 관리
 - '85 ~ '99까지 6회에 걸쳐 개정

2. 경영효율 증진을 위한 구조개선 노력

- 대체농지조성비 수납제도 개선으로 합리적 부담금 관리
 - < 개선내용 >
 - 고지납입제도 → 신고납입제도
 - 농·수·축협(5,200개소) → 전 금융기관(12,000개소), GIRO제도 도입
 - GIRO제 도입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 < 기대효과 >
 - 전 금융기관 납부가능으로 대민 서비스 강화
 - 전용부담금 수익의 안정적 확보
 - 농지조성사업 투자재원 확보로 농지관리기금 경영 효율 증진

□ 계정간 자금 일시전용 근거 마련

-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간 소요자금 일시전용 근거 마련
(근거 : 농지관리기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 자금소요를 해결

□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현실화

- 도입배경
 - 농지조성비 부과기준 현실화로 우량농지 보전
 - 농지조성비 단가변경 내역

(단위 : 원/m²)

구 분	당 초('97. 1. 1)	변 경('99. 2. 1)	인상율(%)
① 경지정리 논	5,840	7,200	23
② 용수개발 논	9,600	11,900	24
③ ①+② 논	11,840	14,600	23
④ 경지정리 밭	4,710	6,000	27
⑤ ①~④ 제외	3,600	4,500	25

- 기대효과
 - 농지관리기금 재원의 확충으로 기금경영의 안정화에 기여
 - 고시단가를 농지가격과 연계로 농지전용 억제 효과

□ 위탁관리조직 slim화

- '98년도부터 조직 슬림화로 획기적 비용 절감
 - ('98) 71백만원 → ('99) 97백만원 절감

□ 기타 구조개선 노력

- 법정 부담금 GIRO제도 도입
- 기금운용을 위한 전산 현대화 추진 정보화 시대에 대응

3. 누적적자가 발생할 경우 해소방안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관리계정)의 다각적 적자해소 노력으로 기금의 건실화 추진

- 농지관리계정 적자 누계 : 8,135억원('99년 말 현재)
- 농지관리계정 적자 요인
 - '94~'97까지 농지관리계정 주채원인 정부출연금의 중단
 - 영농규모화사업 재원을 고금리(5~14%)로 차입 저금리(3%)지원으로 인한 금리차(5~11%)
- 적자해소를 위한 노력
 - 정부출연금 재개
 - '98년 800억원, '99년 400억원, '2000년 400억원
 - '94년 이후 조성재원의 금리차손 이상 일반회계 출연 지속 요구 (이자지출이 없는 정부출연금의 지원 확대 필요)
 - 기금사업(영농규모화사업)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제도도입
 - 농지매매, 교환분합 이자율 상향 : 3 → 4.5%(1.5%인상)
 - 농업인 자부담제도 실시
 - ⇒ 단가/ 평 3만원까지 : 10%
 - 3만원 초과분 : 전액
 -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 위주로 전환
 - ⇒ 농지매매 및 임대차 사업 지원 비중 조정 (3 : 7 → 2 : 8)
 - ※ 매매사업단가 : 70.1백만원/ha, 임대차 : 18.6백만원/ha

여 백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Ⅲ . 사업운영평가

1. 주요사업 실적

가. 영농규모화사업	27
나. 농지조성사업	35
다. 농지정보화사업	43
라. 농지관리위원지원사업	53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61
바. 기타사업	
1) 조성토지매각관리	69
2) 진흥지역밖자원조사	75
3) 농지이용증진조사	81

2.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가. 농지관리계정	89
나. 농지조성계정	91

여 백

1. 주요사업 실적

가. 영농규모화사업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영농규모화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농지관리기금 설치
 - '90년 7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영농규모화사업 추진근거 : 동법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 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 및 영농규모화사업 시행 목적
 - 농가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
 - 논면적 및 쌀생산량 감소에 대처 자금기반 마련
 - 전업·은퇴농가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생산적으로 이전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고유업무
 - 영농규모화사업은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외국사례를 수집하여 업무 Process 개선등 효율적 추진에 활용
 - 매년 정기적인 자체평가회를 개최, 사업성과분석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사업평가 의뢰 및 세미나 개최 등으로 개선방안 마련
- 영농규모화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쌀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42조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중 가장 건실한 사업으로 평가
 -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쌀시장 개방폭 확대 이후에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므로 2004년까지 경쟁력있는 대규모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육성이 시급히 필요함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1. 용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 용자대상 선정기준 결정과정

- 영농규모화사업 용자대상자인 쌀전업농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항목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훈령)에 명문화하여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며 매년 사업시행자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기준 재검토

□ 용자대상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일정수준의 경영규모, 영농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추어 쌀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를 선정
- 용자대상자인 쌀전업농 선정시 7개항목에 대해 700점 만점으로 평가
 - 영농경력(100점), 농과계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00점), 경영규모(100점)
 - 기계화수준(50점), 재배기술 및 영농능력(150점), 사업계획 및 영농규모 확대의욕(200점), 가산점등 기타(50점)

□ 선정기준 적용

- 쌀전업농 신청자에 대해 종합평가후 400점 이상인 우수자를 선정하되 벼재배 경영규모별로 선정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
- 쌀전업농 희망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훈령)의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 심의 및 농업기반공사의 추천 후,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선정

2. 용자조건 선정의 합리성

□ 용자지원 배경

- 농업부문의 자본제약에 따라 산업간 형평성을 유도하고 비농가의 농지소유 억제 및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필요
- 농가인구 감소와 인력구조 고령화로 휴경농지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기계화영농이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쌀생산 전문경영체의 확보가 필수적임
- 젊고 능력있는 농업인력은 상대적으로 자본축적이 부족하여 생산수단인 농지의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의 장기저리 용자지원 필요

□ 사업별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매매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매입에 따른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도록 이자율 및 기간 산정
 - 쌀전업농의 자립마인드 형성을 위해 지원상한의 10% 농업인 자부담
 - 자력으로 농지확대가 가능하도록 소득의 10% 수준 농가임여 확보
 - * 용자조건 : 연이율 4.5%, 20년 균등분할상환
- 농지임대차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쌀전업농의 대형농기계구입등 장기간 안정적 경영을 위하여 임대자의 장기계약에 따른 소유권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임대기간 임차료 선급
 - 임차농가는 개인간 임대차와 같이 매년 약정 임차료를 기금에 상환하고 자력으로 농지확대를 할 수 있도록 농가임여 제공
 - 용자조건 : 무이자, 계약기간 균등분할상환
- 농지교환분합사업 용자조건 산정기준
 - 농지구입에 따른 수익이 상환금등 비용을 초과하도록 산정
 - 용자조건 : 4.5%, 10년 균등분할상환

□ 용자조건 산정절차

- 연구기관, 수요자, 사업시행자, 연구기관등 다각적 의견수렴 실시
- 기금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기타 대내외 의견 수렴
- 타부처(부서등)와 용자조건 관련 협의
- 농림부 훈령등 관련제도 개선

□ 용자조건 적용

- 매매 및 임대차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용자조건 설정 및 적용
- 용자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
 - '99년도 사업지원시 용자조건 준수율 : 100%
- 자연재해에 따른 용자조건 적용 조정
 - 원리금 상환능력을 상실한 재해농가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경영여건 악화로 인한 부실채권화 방지
 - 자연재해 농가에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사업 원리금상환 연기 및 당해연도 임차료 감면
 - '99년도 총 5,052호의 자연재해농가에 11,083백만원 상환기간 연장등 지원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영농규모화사업 채권관리 체계

- 납부고지서 발부(약정일 20일전) → 1차·2차·3차 상환독촉장(약정일, 1개월, 2개월 경과시) → 기한이익상실통지(3개월 경과시) → 계약해지 통지(약정일 6개월 경과시) → 농지소유권 이전 → 법적조치(소유권이전 불응시등)

□ 부실채권 정리절차

- 농업기반공사 지사 부실채권심의회에서 정리대상 1차 심의
- 농업기반공사 자체 특별감사 실시
- 농업기반공사 부실채권심의회 심의후 농림부에 손비처리 승인 요청
- 농림부 승인 및 기금정산
- 농림부 승인후 5년간 매년 1회이상 잔여재산조사등 지속 회수관리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사업목표 설정의 합리성

- 쌀전업농 장기육성계획에 의거,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 연간 사업목표 확정 및 사업추진결과 Feed-Back

목표대비 달성도

- '95~'99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결과 사업추진목표 100% 달성
- 3ha이상 대규모농가 증대에 기여
- 수해쌀전업농의 규모확대에 따른 쌀생산비 5.1% 절감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 쌀전업농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기관의 사업발전방향 연구용역시행 및 연구결과 사업시행에 반영
- '99년도 1,400농가에 대한 무료 쌀전업농 경영진단·지도 실시
- 고객서비스표준마련, 고객서비스실천계획 수립, 시행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9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들의 성과평가 및 쌀농업 발전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도부터 사업 목표관리시스템 도입

성과평가결과의 보고 및 사후조치체계의 적정성

- 매년 영농규모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분석 보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토론, 사업발전방향 모색 등 실시
- 사업평가결과에 대해 조직 및 개인별로 포상하고, 문제점 검토 및 개선 의견수렴내용을 제도개선에 반영

여 백

나. 농 지 조 성 사 업

- 서남해안간척
- 대단위농업개발
- 유희지개발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농지조성사업의 목적

- 서남해안의 간석지와 유휴지를 우량농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조성함으로써 농업생산구조 개선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농경지감소면적 : 1966년 2,293천ha ⇒ 1999년 1,898천ha (△395천ha)
 - 농경지전용면적 : 1980년대 연평균 14천ha ⇒ 1990년대 연평균 32.5천ha
-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공·생활용수등 수자원을 확보·공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 기틀 마련
 - 수자원 확보량 : 16지구 31억톤
 - '99까지 : 11지구 17억톤, · 2000이후 : 5지구 14억톤
 -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70mm로 세계평균 970mm의 1.3배이나, 국민 1인당 강수량은 세계 인구 1인당 강수량의 1/11에 불과
 -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크고,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매우적고 하류평야와 상류지역간의 용수 수급 불균형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용도변경에 대처하여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
 - 방조제 설치 등으로 해안선 단축, 육운개선
 - 담수호중심의 관광자원 조성
 - 수자원 및 토지공급으로 공단 등 산업입지여건 조성
- 임해공업단지의 조성, 해안정비 및 항만개발 등을 통한 국가 기간 시설 확충

□ 농지관리기금 설치 목적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1조)
 -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지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2.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

□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기금의 투자

- 총 17개지구 (대단위3, 서남해안12, 유희지2)
 - 14개지구 농지관리기금사업 추진중
 - 대단위 3개지구 국고+농지관리기금 추진

□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 농지관리기금은 농림부 외 타부처의 사업기금과는 달리 공공기금에 속하며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대체농지조성을 하는 SOC·공공사업으로 유사사업이 없는 정책사업이며 법률에 따라 시·군 및 정부투자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농지조성사업의 시행

- 산업용지 및 도시용지로 전용될 농지를 대체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기본식량의 확보를 위하여 농지관리기금 설치목적중의 하나로 추진
 - '46년 이후 총 75,738ha를 추진하였으며, 그중 정부시행은 35,549ha(46.9%), 민간시행면적이 40,189ha(53.1%)임.

□ 농지조성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수심이 얕고, 해안선 굴곡이 심하며, 조석간만의 차가 클 뿐 아니라, 갯벌바닥의 기울기도 완만하여 간척지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인구증가·경제발전·사회발전 등으로 토지수요량 증가 및 식량자급 기반구축의 필요성 대두
- 21C 세계식량위기에 대비한 식량안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대체농지조성을 위한 간척농지개발사업의 필요성 증대
- 간척농지는 식량자급률 유지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1. 사업대상선정의 타당성

□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간척자원자료 일제조사 실시 및 조사자료 D/B구축
 - 종합적인 자원조사를 통한 간척사업조건 및 요인파악
 - 간척자원의 가변자료 및 신규발생자료 정립 필요
 - 간척 부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분석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 대상지구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검증
 - 개발예정지의 투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기대효과 예측
 - 경제분석에 따른 투자우선순위 결정
- 개발계획 수립시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견 반영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변화 분석 및 적용

□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조정

- 친환경 간척농지개발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 추진
 - 범정부차원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추진
 -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
- 간척농지대상면적 축소·조정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설계업무의 전산·자동화

- 전산대중화에 따른 사회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
- 조사설계분야의 업무능률 및 경쟁력 향상
- 성과품질 향상 및 설계보완 업무능률 제고

□ 농지조성사업의 기술자문회의·심의회 운영

- 대규모 간척사업을 효율적·성공적 추진
- 각계전문가의 자문으로 사업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처
- 대외위원 : 71인 (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 시공법 도입 및 신기술의 적용

- 현지여건에 부합한 시공방법 개선
-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기술력 향상에 기여

□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 노력

- 환경친화적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확고한 환경패러다임 구축
- 개발과 보전의 발전방향 모색과 환경마인드 확산

□ 간척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 간척농지 분양전 일시경작 시행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 담수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추진

- ♣ 지표관리부서 : 농림부 농촌용수과 사무관 이봉훈(☎02-504-9406)
 농업기반공사 대단위사업부 2급 이원희(☎0343-420-3239)

1. 사업목적 달성정도

- 대규모 우량농지조성으로 쌀자급기반 구축
 - 간척농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달성도는 '99년말까지 48%가 농지조성되었고, 38%가 시행중에 있으며 14%를 앞으로 시행할 예정임
 - 총대상면적 : 157천ha, '99까지 : 76천ha, 2000시행중 : 60천ha
- 간척지 일시경작시행으로 쌀증산 추진
 - 일시경작지침 기준마련 및 대상자 지정
 - 경작면적 : 23,122ha, - 식량 증수량 : 94,638톤
- 간척지 분배추진으로 재투자 재원확보
 - 간척농지 조기분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규모화 추진
 - 매각면적 : 1,074ha, - 매각금액 : 656억원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
 - 환경변화에 대응한 개선노력
 - 간척사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추진방식의 정책방향 정립·추진 및 대규모 간척계획 철회
 -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 경쟁력 강화, 기술력향상 등을 위해 신공법을 도입하고 신기술 적용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 미비점 발굴보완 및 평가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방향 정립
- 성과평가 관리의 합리성
 - 사업시행시 도출된 문제점을 타 지구에 적용 등

여 백

다. 농지 정보화 사업

- 농지원부전산화
- 농촌지형정보구축
- 진흥지역 상세도면작성
- 농지지번도 전산화

여 백

지표명

2.1 사업선정의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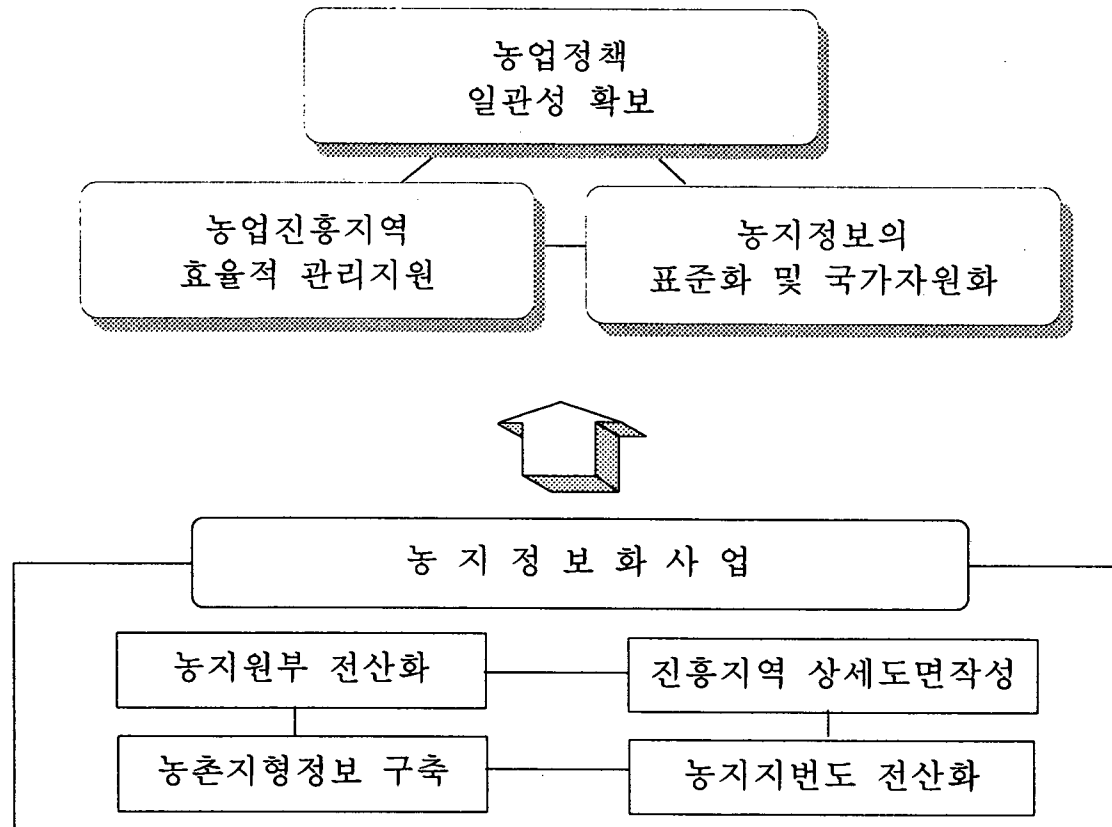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사업목표



□ 농지정보화사업 시행 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1조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사업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사전검토 연계성 구축

- 농지정보화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성을 피하고 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분석 호환토록 구상하고
- 농지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자료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관련기관의 사업을 조사·분석함.

□ 자료공유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노력

- 농지정보화사업은 관련기관의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농지관리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생산성을 높이고
- 정부부처간 업무협력체제 유지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추진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지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사업대상

사업별	선정 사유	대상업무
농지원부	○ 전국 일선행정기관(시·구·읍·면)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농지원부(143만 농가)를 전산화	- 전국 143만 농가 - 전국 1,550만 농지 (전·답·과수)
농촌지형정보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농업기반시설관리계획, 시·군 농지이용계획, 국가지리정보 구축계획 등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농촌 관련 개발계획수립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전국 농지관리 및 농어촌 개발관련 도면자료 20종
진흥지역상세도면	○ 농지면적이 3,000ha이상 시·군·구 ○ 1/5,000 지번도 작성 시·군·구 우선시행	- 전국농업진흥지역 농지 690만 필지
농지지번도 전산화	○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 업무	- 농업진흥지역관리 - 농지전용

□ 농지정보화 업무 선정의 타당성

- 사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평가결과 농지원부 전산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GIS, CAD정보의 기반 조성후 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지번도 전산화 사업을 수행하였음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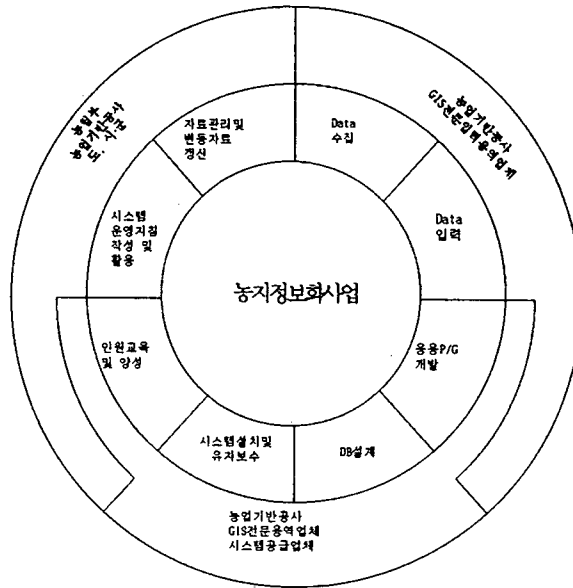
요구 및 기대사항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DB등 전산정보를 정책 수립에 이용 ○ 실경작자 확인 및 소유자 확인 민원서류 대체 활용 ○ 농촌지형정보시스템 구축 과학적인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산 DB구축을 조기('94.12)완료하여 전략 자원화 ○ " " ○ 연차적 계획으로 구축하여 자료의 표준화 및 국가자원 공유화에 도모코저 계획

□ 사업별 사업활동

사업명	대상업무	사업활동
농지원부	농가일반사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일반사항 변경신청 접수 · 농가일반사항 변경 정리
	농지이동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동 변경신청 접수 · 농지이동 정리
농촌지형정보	농정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 · 농지이용계획수립 지원자료로 활용 ·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책에 대한 대농어민 설득력 제고에 활용
진흥지역 상세도면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도면(1/25,000 지형도)중 오류부분 수정, 고시후 변동사항 표시
농지지번도 전산화	농업진흥지역관리 및 농지 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자료 구축 · 응용프로그램 개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관리 - 농지전용 업무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사업추진체계와 역할분담 정립



□ 농지정보화사업 효율성 제고 실적

- 관련기관과 연계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각 기관별 정보의 공유 노력
 - 환경부 보유 위성영상 자료 취득
 - 농림부 ↔ 한국자원연구소 GIS 자료 공유 추진
 - 농림부 ↔ 농촌진흥청 GIS 자료 공유 추진
- 농촌지형정보의 전략적 활용실적
 - 국토개발연구원 등에 농업진흥지역도 등 20종 41,045매
- 농지원부 D/B 운영개선 노력
 - 농지 D/B 운영개선
 -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P/G 설치 및 변동자료 출력배부
- 원격탐사 신기술 도입으로 표준화된 농업정보 제공 기반조성
- 중앙전산개발 및 정보이용경진대회 참석
- 감사원 감사결과 수범사례선정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5)
 농업기반공사 사업정보부 2급 이석태(☎0343-420-3207)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목표대비 달성도

-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계	'95	'96	'97	'98	'99
			계	계획	13,023	1,964	2,000
	실적	11,771	1,648	1,632	2,491	4,411	1,589
	%	90	84	82	84	98	99

- 사업목표 대비 분석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목표달성 제고
 - '95년(84%)→'99년(99%) 달성도 제고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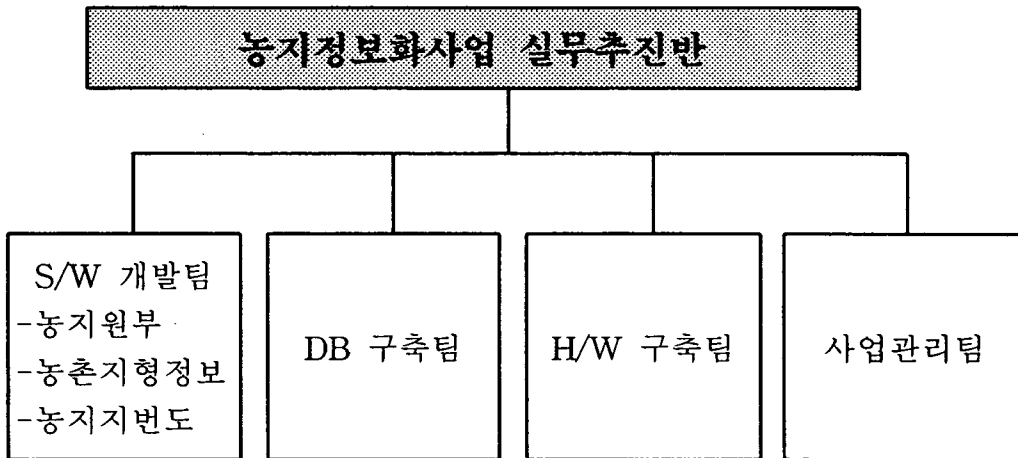
□ 사업대상 또는 수혜자의 만족도와 서비스 개선노력

- 일선 행정기관 PC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설치
- 농지원부 일제정비로 정확도 제고 노력
 - 정비기간 : '98. 1월 ~ 12월 (1년간)
- 농지정보시스템으로 행정기관 민원처리 활용
- 고객 만족을 위한 P/G 및 data 수정보완 · 설치지원
- 농지정보 자료갱신을 위한 data 교류
- 농지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자료 구축운영을 위한 Y2K 해결노력
- RGIS 웹서비스시스템 개발로 대농민 및 일선 행정기관 농지정보제공
- RIGS 통합운영시스템개발로 일선 행정기관 활용기반 조성
- 시군 행정기관 시연회 개최 및 중앙단위의 전시회 참가로 사업 홍보
 - 유관기관에 대한 농촌지형정보시스템 설명회 개최
 - 농업기반정보기술 설명회 전시
 - GIS 주제도 활용에 관한 주제 발표
 - 대농업인 및 유관기관 홍보용 리프렛 발간 배부
 - 농지지도전산화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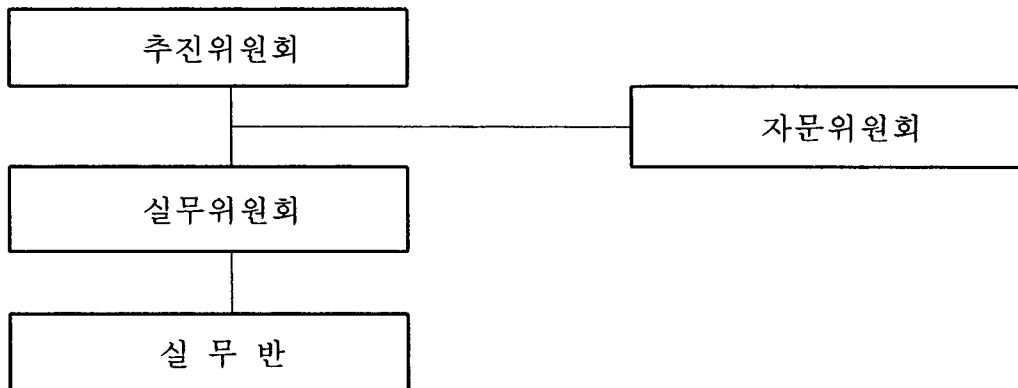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사업관리체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노력

- 농지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음.
 - 조직 및 업무분장



○ 추진위원회 구성



○ 자료구축 후 유지관리체계 수립

- 방대한 자료의 처리, 자료의 항상성 및 최신자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의 갱신과정이 필요

□ 성과평가에 따른 개선노력의 적정성

-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응용프로그램 보완
 -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여 백

라. 농지관리위원지원사업

농지관리위원지원

농지관리위원교육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농지관리기금 설치근거
 -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 추진근거 : 동법 제10조, 제31조 등
- 농지관리기금 설치 및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 시행 목적
 -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촉진 도모
 - 사명감 고취 및 농지관리업무처리 능력 배양
 - 선진농업국의 사례전파를 통한 국민 공감대 형성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중복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고유업무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은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병행, 추진
 - 농지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및 확대
- 농지관리위원관련사업의 차별적 필요성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농업 및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
 - 뉴라운드 협상과 연관, 식량안보차원에서 주곡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하여, 그 전제가 되는 농지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인력 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

- 농지관리위원 교육대상 인원 및 지역등에 대한 기준을 책정하여 합리적으로 선정
-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교육이수자 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 선정기준
 - 관할지역에서 3년이상 농업경영자중 시장·군수가 5인이상 위촉
 -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농업관련 단체임직원
 - 시·구·읍·면장(당연직 위원장)
- 농지관리위원 구성비
 - 현지 농업인 : 86%
 - 농업관련기관 임직원 : 14%
- 위원의 임기
 -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 : 3년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대상국 및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
농업선진국의 최신정보 습득 및 파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연수효과극대화를 위하여 적정인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연수 추진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

-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지방교육을 지양하고, 교육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앙교육에 주력
- 농지관리를 위한 실무중심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사업과 교육목적의 원활한 연계 도모
 - 사명감인식 및 실무지식습득 기회 제공
 -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활성화 유도
 - 농지행정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자율적 농지관리체제 실현
 - 농업정책 및 농지정책 홍보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일선농업현장에서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농지관리 및 보전의 체계 확립에 노력
- 식량자급기반유지를 위한 전제인 농지의 적정한 보전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농지이용과 관리의 주체인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정책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업선진국의 농지관리제도 등 다양한 농업관련정보습득 기회로, 해외연수사업을 활용하고 있음
- 급변하는 국제경영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 및 농업인의 국제경쟁력 활성화 촉진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업

- 교육이수인원관리 등 교육서비스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모색을 통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효율성 제고 실적
 - 교육인원 및 지역의 합리적 선정
 - 교육업무의 정보화
 - 모범 농지관리위원 표창 등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회는 현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되어 현장감있고 공개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율적 농업조직인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농지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음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은 사전국내교육, 연수보고서 작성 등을 통한 연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윤명중(☎ 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교수부 2급 곽창호(☎0343-420-3219)

1. 사업목적 달성정도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농지보전의 중요성에 따라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를 반영한 목표 설정
- '92~'99년까지 전체대상인원 중 16,337명에 대한 교육완료(실적을 50%)
- 서비스개선 노력
 -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익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 노력
 - 교육업무의 정보화를 통한 경영개선 도모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을 통한 농지보전에 크게 기여
- 농지감소면적이 '96년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원의 결과로 파악됨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환율 및 연수국에 따른 사업인원의 증감을 감안하여, 사업비대비 연수국, 연수기간을 고려한 목표 설정
- 해외연수 후 사업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수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전 국내교육 등 운영

2. 성과평가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지관리위원 교육사업

- 설문분석을 통한 평가사항을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개선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 성과평가결과의 조치 및 그 적정성
 - 종합보고서 발간·배부
 - 교육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농지관리위원교육사이트 구축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주력

□ 농지관리위원 해외연수사업

- 연수평가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농업인 교육자료, 농지정책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마. 한계농지정비사업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어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 (☎ 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 2급 주경노(☎0343-420-3392)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우량농지보전을 위한 적극적 방법으로 한계농지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지원
 - 사업지원근거 및 사업시행근거법 제정
-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추진 방향 구상
 - 유희·한계농지의 다목적활용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과에 의거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방안 강구
- 사업의 목적, 기금목적과의 일치여부 검토

2. 예산 및 타 기관과의 사업 중복

- 예산 및 타 기금의 유사사업 중복투자 검토
 - 유사사업은 없으나 개발형태가 유사한 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기금지원 계획 수립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어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 (☎ 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2급 주경노(☎0343-420-3392)

1. 용자대상선정의 적정성

- 사업시행자에게 선정기준 정립
- 한계농지정비지구 선정위원회 운영
- 사업시행을 위한 경영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지구 개발유형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한계농지정비기획단 운영

2. 용자조건 산정의 합리성

- 농지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검토
 - 용자 기간, 사업의 성격, 수익성, 상환능력, 유사사업 비교

3. 부실채권 관리의 적정성

- 한계농지개발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 및 시행자 자체자금으로 상환

- ♣ 작성책임자: 농림부 농어촌정비과 서기관 남궁박 (☎ 02-504-9404)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개발부 2급 주경노(☎0343-420-3392)

1. 사업목적 달성정도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추진현황 관리체계 구축
- 한계농지정비사업 시범사업추진
 - 5개지구 36.1ha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농림업적이용형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향후 추진방안 정립

여 백

바. 기 타 사 업

- 1) 조성토지매각관리사업
- 2) 진흥지역박 자원조사사업
- 3) 농지이용증진조사사업

여 백

1) 조성토지매각관리사업

조성토지 매각관리

조성토지 매각대징수

시설유지관리

일시위탁관리비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서기관 양기순 (☎ 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 (☎ 0343-420-3242)

1. 기금 설치목적과의 적합성

- 간척농지 매각을 통한 영농규모화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매각대금 징수로 농지관리기금 재원확충
- 조성토지 매각
 - 매각면적 : 9,096ha (8지구)
 - 매각대금 : 354,450백만원
 - ※ '86~'99(누계) : 29지구 11,459ha
 - 농지관리기금 재원조달 : 807억원
 - 매 각 대 금 : 76,218백만원
 - 원 금 : 59,160 "
 - 이 자 : 17,058 "
 - 일시경작료 : 4,503백만원
 - 매각관리비 집행 : 49억원
 - 시행지구수 : 15지구
 - 집행액 : 4,889백만원

2. 예산 및 타기금과의 사업중복

-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예산 또는 타기금 없음
- ※ 농지관리기금의 조성재원
- ① 정부출연금
 - ② 재정투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③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④ 농지조성비 납입금
 - 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⑥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등의 매각대금
 - ⑦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서기관 양기순 (☎ 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 (☎ 0343-420-3242)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매각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시설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

매각관리비 지원대상

- 매각관리비, 일시위탁경작비, 매각대금징수비, 시설물유지관리비

2. 사업내용의 적합성

조성토지의 매각 및 일시위탁경작, 매각대금징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하여 조성토지의 활용성 제고와 기금수익 증대

○ 조성토지 매각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조성농지를 매각함으로써 영농규모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 조성토지의 일시위탁 경작

- 내부 개답공사가 완공된 농지를 사업준공시까지 일시경작

○ 완공된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3.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 조성토지 매각제도의 개선으로 기금조성의 효율성 제고

-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우선매각제도 폐지
- 부분준공 조성토지의 매각추진
- 조성토지 매각대금 기금납부 의무화, 필요경비 기금에 반영

□ 간척지 관리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 인력절감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지표명

2.3 사업목적의 달성도

가중치

15점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촌용수과 서기관 양기순 (☎ 02-504-9406)
농업기반공사 용지보상부 3급 박상국 (☎ 0343-420-3242)

1. 사업목표 달성 정도

- 사업목표 설정 관리
 - 공사준공지구 일시경작 및 매각관리 사업목표 설정
- 사업별 목표대비 달성도
 - '95~'99 매각대상토지 매각완료 및 매각대금 징수목표액 100% 초과달성
- 대농업인 서비스 개선
 - 매각대금 징수업무를 CMS와 연계 농업인의 납부편의 제공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성과에 따른 개선노력
 - 간척지정보통합시스템을 개발 매각관리업무 전산화 구축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매각관리지침 제정으로 업무능률 제고

2) 진흥지역밖 지원조사

여 백

지표명	2. 1 사업선정의 타당성	가중치
		15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1.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 농업진흥지역밖 한계농지의 농지이용을 제고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농업노동력 감소, 영농여건불리, 기계화영농의 어려움등으로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농지의 타목적 전용이 늘어나는등 국토자원의 황폐화가 우려되므로 진흥지역밖 농지자원의 특성을 파악,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여건등 지역여건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운용함으로써 농지의 이용·보전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에 사업목적이 있음
 - 농지관리기금의 설치목적(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됨.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는 '93~'96 기간에 걸쳐 시행한 진흥지역밖 농지자원 조사외에는 없음.
 -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의 내용
 - 농지의 이용실태, 농지자원조사특성분석, 농지이용 적성 구분(농지이용계획)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농지면적 3,000ha 이상의 시·군·구 대상
 - 농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 실지조사 : 151개 시·군·구(도상조사 : 178 시·군·구)
 - 도상조사 → 유관기관 및 주민의향 조사 → 현지조사 → 농지이용계획 수립

사업내용의 적합성

- 농지의 지대별 구분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농업유지 구역, 다목적 구역
- 농지의 용지별 구분
 -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 지구
- 생산기반종합 정비계획 수립
 - 농지이용계획을 토대로 농업유지구역에 대한 생산기반 종합 정비계획 수립

사업운영의 효율적 제고 노력

- 전국 농지의 도상조사를 토대로 현지조사 실시
 - 도상조사 : 178개 시·군·구 → 현지조사 : 151개 시·군·구
- 기존의 계획을 최대한 활용
 - 생산기반종합정비계획, 정밀토양도, 생활환경정비계획 등
- 기관별 역할분담 시행
 - 농림부, 시·군·구, 농업기반공사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0-2635)
농업기반공사 정주권계획부 2급 이기옥(☎0343-420-3403)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 농지자원조사를 통한 농지의 합리적 정비
 - 무분별한 농지전용 억제(지자체)
 -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감소 : '95 16,279ha → '99 12,017ha
 - 농지의 이용·보전·관리 지침 마련
 - 농업발전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지원시
 -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시 반영
 - 농지이용증진사업과 연계추진
- 농지제도개선 추진
 - 한계농지 기본조사 결과를 농어촌정비법에 반영
 - 한계농지 기준 정비
 - 한계농지 정비유형(3개유형) 정립
 - 농지법 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전국 농지의 용도지구별 면적 : 2,278천ha
 - 농지이용계획 수립 : 5년마다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 진흥지역밖 자원조사등을 고쳐 입안된 농지이용계획을 시장·군수는
 - 당해지역의 농업발전계획등 지역개발계획 수립과정에 활용
 - 농업관련 정책자금등 지원시 활용
 - 자율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우선순위 결정
 - 공공사업의 경우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지구가 선정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조사결과」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행정관청(시·군) 및 실수요자들에게 적정여부 판단
 - 농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군에서 조치

여 백

3) 농지이용증진사업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1.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농지관리기금설치 목적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농지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 성장 가능성 있는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기금설치 목적과의 적합성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였으므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지관리기금설치목적에 부합됨.

2. 예산 및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

타 기금과의 사업 중복여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른 어떠한 기금과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았음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1.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

- 영농규모화사업의 목적
 - 규모화·전문화된 쌀전업농 육성
 -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로 농업생산성 증대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목적
 -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에 의한 농지의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용
 - 전문가족농을 육성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제고 도모
-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대상
 - 3개 유형별 시행계획수립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따라서 유형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요령을 작성하는 것을 농지이용증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

2. 사업내용의 적합성

- 사업내용의 적합성
 - 시행계획 수립
 - 입력 및 GIS프로그램 개발
 - 시행계획수립요령 작성

⇒ 영농규모화사업과 농지이용증진사업 내용에 적합함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사무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경제조사부 2급 이형순(☎0343-420-3222)

1. 사업목적 달성 정도

목표설정의 합리성

규모화사업 추진 시 규모화 및 집단화가 가능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사·지부에서 규모화사업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 분석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전산화하고, 지침을 작성하여 업무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목표설정이 합리적임

목표 대비 달성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이 모두 목표에 달성하였음

2. 성과평가 관리체계의 합리성

성과평가의 합리성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에 대해 계획 대비 실적을 성과로 평가한 것은 합리적임

여 백

2. 사업간 자원배분의 적절성

가. 농지관리계정

나. 농지조성계정

여 백

-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전종철(☎02-503-7264)
 농업기반공사 농지관리부 2급 신현국(☎0343-420-3220)

가. 농지관리계정

- 우선 순위 선정의 합리성

□ 우선순위 선정기준

- 예산과 결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배분의 최적화 도모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계정간 구분계리원칙 반영
- 영농규모화사업 관련 정책방향의 변화에 따라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추진
- 각 사업별로 예산소요, 사업효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정도 등 개별특성을 감안
- 농지교환분합사업의 경우, 경지정리지구 집단환지 청산금 지원과 연계되고 지원규모가 작으므로 실제 발생하는 경지정리 물량을 감안 규모 결정

□ 우선순위 선정기준 설정 합리적 논거

- 각 사업별 특성 분석 및 정책목적 변화를 반영
- 각 사업별 특성 분석

구분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포함)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
·사업비단가	·사업비단가 높음	·사업비단가 낮음	·사업비단가 높음
·예산소요	·예산소요액 많음	·예산소요액 적음	·예산소요액 적음
·주요사업효과	·항구적 규모확대 ·경자유전 실현	·장기간 경영계획에 의한 대형농기계등 자본투자 가능	·집단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가능 ·경지정리를 통한 교환분합 촉진

- 정책목적 변화 반영

- '90년도 처음 경자유전 실현 정책목적에 맞게 농지매매사업에 우선지원
- '96년 『쌀산업발전종합대책』에 의거 '97년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임대차사업 우선지원
 <매매/임대 비율>
 ('97) 4:6 → ('98) 3:7 → ('99) 2:8

- 우선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우선순위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과정별로 관련자 의견 수렴

□ 우선순위 선정 절차

- ① 농업환경변화 분석 : 대내·외적인 농업, 경제상환 분석
- ② 사업목표 설정 :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목표 설정
- ③ 의견수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연구기관, 수요자등의 의견수렴
- ④ 농림부 자체 검토 :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기본으로 농지과, 기획관리실 등의 자체 검토 실시
- ⑤ 기획예산처와 협의 : 사업간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 관련 협의
- ⑥ 우선순위 확정 :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우선순위 확정

- 우선 순위 적용의 합리성

□ 우선순위 적용 결과

- '90~'96년도중 농지매매사업의 면적비중이 87.4%를 차지하여 농지소유권 이동에 의한 규모확대를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부합하게 추진 하였음
- '97~'99년도에는 농지임대차사업의 면적비중이 74.4%로 나타났으며, 이는 '90~'96년의 11.1%에 비해 5.7배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임대차사업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사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라는 우선순위 적용기준에 대한 적용 노력의 결과임

나. 농지조성계정

- 우선 순위 선정의 합리성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농지조성사업을 주목적사업, 연구 및 기본조사사업, 경상적소요비용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순위선정
- 국민식량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우량농지 조성효과가 높은 사업에 자원 우선배분
 - 서남해안간척 및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집중투자
- 자원조사, 농지정보사업 등 목적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연구분석사업 우선반영
- 철저한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대상지 선정
 - 합리적인 대상지 선정으로 사업효과 조기 거양

□ 우선순위 선정기준 합리적 논거

- 사업내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결정
 - ① 조성토지 매각관리비, 기금위탁관리비 실소요액
 - ② 타당성조사, 농지관리위원지원 등 사전증장기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 ③ 정책목표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구축사업
 - ④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시행하는 농지조성사업
- 총 조성재원중 당해연도 필수적으로 투자하여야하는 연구 및 경상비를 최우선적으로 배분한후 나머지 자원을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정하여 배분
 - 농지조성사업 투자율 : 우선배정율 = 96 : 4

- 우선 순위 선정절차의 투명성

□ 기본방향

-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 확보
- 정책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사업우선순위 탄력성 조정
- 부실경영체의 무리한 사업참여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 3단계로 우선순위 선정기준 검토

- 제1단계 : 사업제안서 검토
 - 정부차원의 자금지원 필요성
 - 농업인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또는 공청회 결과
 - 제반 법률적 저촉 여부
- 제2단계 : 사업 우선순위 검토

- 우선순위 적용의 합리성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우선순위 적용

- 우선순위 적용의 정형화, 공개화로 합리성 확보
- 자율성 확대 및 자조역량 향상에 기여

□ 공정계획에 일치되는 우선순위 적용으로 예산배분 정확도 제고

-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배정과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8			99		
	예산	실적	실적율	예산	실적	실적율
계	2,839	2,826	99.7	2,029	2,029	100
○ 서남해안	1,295	1,290	100	1,100	1,100	100
○ 대단위	1,520	1,520	100	900	900	100
○ 유희지	24	16	66.7	29	29	100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 규정에 의한 합리적 예산집행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IV . 관리조직평가

3. 1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95
3. 1. 1 의사결정의 투명성	95
3. 1. 2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97
3. 2 기금관리조직의 효율성	100
3. 2. 1 관리조직의 전문성	100
3. 2. 2 관리조직의 합리성	102

여 백

지표명	3.1 기금운용 의사결정체제	가중치
		12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0343-420-3225)

3.1.1 의사결정의 투명성	가중치
	12점

1.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구성 근거 마련
 - 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 구성 : 위원장(농림부 차관) 포함 15인 이내
 - 최근 5개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위원 구성시기
 - '95 ~ '97 : '95. 2. 3(농림부 농지51316-70호)
 - '97 ~ '99 : '97. 2.13(농림부 농지51316-138호)
 - '99 ~ '01 : '99. 4.27(농림부 농지51316-509호)

- 기금운용심의회 실제 운영으로 적시성(Timeliness) 확보
 - '95년도 : 「한계농지개발사업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융자조건 결정」 등 3건 심의
 - '96년도 : 「'95회계년도 결산」 등 2건 심의
 - '97년도 : 「'97회계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 등 2건 심의
 - '98년도 : 「'98년도 1차 기금수정운용계획」 등 3건 심의
 - '99년도 : 「'98회계년도 결산」 등 2건 심의

- 농지관리기금운용심의회 의결사항의 기록과 공개로 운용의 명료성(Clarify) 및 투명성 확보
 - 의결사항 기록 실적
 - '95 ~ '99까지 12차에 걸쳐 의결 및 기록
 - 의결내용 : “한계농지개발사업을 위한 농지관리기금 융자조건 결정” 등 12건

2. 정보의 공개

□ 농지관리기금운용 현황의 공개

-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자료등 정기적으로 발간·배포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 도모
 - 수록내용 : 기금운용계획대 실적, 재산상태, 손익상황, 연도별 재원조성현황, 사업성과 및 전망 등
 - 배 부 처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등
- 매년 『농지관리기금 업무편람』 작성·배포
 - 작성시기 : 매년 3월경
 - 배 부 처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등
- 위탁기관(농업기반공사) 홈페이지 개설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강화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arico.co.kr>
(※ 농지관리기금 선택)

□ 농지관리기금 운용 결과 감사 및 사업관련 책자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보급하여 기금사업의 이해도 제고

⇒ 기금사업의 Feed-Back

- 감사기관 : 기획예산처, 감사원, 국회 ⇒ 제도개선
- 사업관련 책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지관리기금 업무편람』, 『매립지관리및분양규정』,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 『농지업무 편람』 등

□ 기금업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안내 리후렛 제작·배부하여 고객만족의 효과

- 내 용 : 법령개정 내용, GIRO 납입제도 안내, 기금환급 절차등
- 배부처 : 각 시·군 민원실, 농업기반공사 각 지부, 민원실 방문 민원인

1. 권한과 책임의 명료성

- 농지관리기금 운용·관리조직을 법정화 하여 조직의 명확화
 - 근거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
 - 기금계정의 설치
 - 기금운용관리자(농림부 장관) : 한국은행에 기금계정 설치
 - 기금위탁관리자(농업기반공사) : 농·축협 중앙회에 계정설치
 - 기금의 회계기관
 - 기금출납명령관 : 농림부 농지과장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기금출납담당임원 : 농업기반공사 구조개선 이사
 - 기금출납원 : 농업기반공사 기금관리처장
- 기금관리조직 업무분장 및 위임전결로 업무의 명확화
 - 농림부 농지과 업무분장 : '99. 6. 9개정. 농림부 훈령 제986호
 - 농림부 농지과 전결규정 : '99. 8.27개정. 농림부 훈령 제997호
 - 기금위탁관리자 업무분장 : 2000. 2. 1개정
 - 농지관리기금 운용 업무의 계획 및 총괄 등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정·시행으로 위탁업무의 명확화 및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자율성 부여
 - 농지관리계정과 농지조성계정의 재원 및 용도 구분 계리
 - 근거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34조
 - 자금집행에 『수시배정제도』, 『일시차입제도』 도입하여 기금의 탄력적 운영
 - 근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11조
- 위탁조직(농업기반공사)의 기금 담당이사 경영계약 체결시 기금 지표 설정·평가로 책임경영체제 구축
 - 지표내용 : 농지관리기금 자금관리, 영농규모화사업 효율적 관리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60점 미만인 경우 해임 건의

2. 운영성과 평가 및 보상제도의 합리성

□ 외부연구기관의 기금사업 평가를 통한 기금의 합리적 운영 도모
 ⇒ 농지관리기금 사업의 객관성 확보

- 『농어촌 투융자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96)
 - 분석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평가내용
 - 쌀 전업농 집중지원으로 농가 경영규모 증대
 - : 지원전 2.47ha → 지원후 3.83ha(평균 1.38ha 증가)
 - 3ha 이상 증가 : 지원전 26.7% → 지원후 61%
 - 쌀산업 육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공적개입에 의한 사업방식 권고
- 『농림사업 평가』 ('97) : 농지관리기금사업중 영농규모화사업
 - 분석기관 : LG경제연구원
 - 평가내용
 - 영농규모화사업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실현
 - 규모화사업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영농규모화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95, '98)
 - 분석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평가내용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로 규모화·전문화 영농 실현
 - 규모확대에 따른 쌀 생산비의 획기적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농업기반공사가 Know-How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위탁관리자 영농규모화사업평가회 개최하여 사업의 Feed-Back
 화 실현 ⇒ 농지관리기금운용정책에 반영

- 평가회 실시 일자
 - '94사업평가 : '95. 4. 6
 - '95사업평가 : '96. 2.28~2.29
 - '96사업평가 : '97. 2.28
 - '97사업평가 : '98. 2.26
 - '98사업평가 : '99. 3.26

○ 평가결과의 활용

- 농지매매 대상농지의 지원상한 철폐
 - (당초) 평당 3만원 이하 → (개선) 가격제한 없이 지원 가능
- 매입대상 농지 확대
 - (당초) 진흥지역안의 답 → (개선) 진흥지역 밖 경지정리가 완료된 답까지 확대
- 임차대상 농지의 확대 : 전매동의 요건 추가 신설

□ 위탁관리자 조직 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 실시로 조직·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양양

○ 부서조직(기금관리처)에 대한 포상

- '91 ~ '98까지 4회에 걸쳐 수상
 - 농지관리기금 업무추진 실적 우수 및 정부시책에 기여

○ 개인별 포상실시

- '95년도 : 2급 류종식 등 5인
 - 농지관리기금운용 유공 및 경영개선
- '96년도 : 4급 강신방 등 6인
 - 농지관리기금운용 업무추진 유공
- '97년도 : 3급 이상용 등 7인
 - 농지관리기금운용 업무추진 유공
- '98년도 : 2급 전철원 등 7인
 - 농지관리기금운용 유공 및 경영개선 활성화
- '99년도 : 1급 송정수 등 8인
 - 농지관리기금운용 유공 및 경영여건 활성화

지표명	3. 2 기금관리조직의 효율성	가중치
		8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581)

3.2.1 관리조직의 전문성	가중치
	8점

1. 전문성 파악 및 전문인력 확보 노력

- 체계적 직무분석(Job Analysis)에 의한 인력배치
 - 위탁관리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농림부 농지과) 최소인력운영
 - 기금담당 인원 : 2인(서기관 1, 7급 1)
 - 기금위탁조직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시 회계관련 과목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전문인력 확보
 - 채용 및 승진시험과목 :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 승진시 회계관련 자격·면허 소지자에 가점제도 도입
 -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세무사 : 총점의 2% 가점

- 기금관리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무분석 및 직무편성을 통한 권한·책임의 명확화 실현
 - 관리조직 직무편성의 원칙
 - 과업(task)내용, 숙련도, 작업방법에 의거 편성
 - 의무·권한·책임의 명확화
 - 관리조직 직무편성에 의한 개인별 업무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 기금운용관리조직(2인) :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분장 실시
 - 기금위탁관리조직(12인) : 관리인원 전원 업무분장 실시
 - 채용된 인력의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인력배치

2. 전문성 개발 노력

□ 위탁조직 내·외부 교육·훈련의 실시로 전문성 제고

- 내부 자체교육에 의한 전문성 배양
 - '95년도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교육 등 2회
 - '96년도 : 직무교육 등 5회
 - '97년도 : 기금정보시스템 교육
 - '98년도 : 농지전용관련 교육 등 7회
 - '99년도 : 농지법 및 업무편람 교육
- 외부 위탁교육으로 업무의 전문화 유도
 - '97년도 실적
 - 서버운영자 교육(교육기관 : 서울 대우센타)
 - UNIX SYSTEM운영및관리교육(교육기관 : 한국정보문화센타)
 - '97년도 실적
 - 관리자 TQM 기본교육(교육기관 : 한국표준협회)
 - 관리자과정교육(교육기관 : 서울대학교)
 - 최고지식경영자(CKO) 과정교육(교육기관 : 삼성데이타시스템)

□ 합리적 인사관리 위한 경력개발제도(C. D. P) 운영

- 경력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의 실시
 - '99. 3.29 ~ 4. 2 : 재정회계정책과정(교육기관 : 중앙공무원교육원)
 - '99. 9.13 ~ 9.17 : 회계실무자과정(교육기관 : 감사교육원)

□ 위탁조직 내·외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지급으로 보수체제와 연계

- 인센티브 총액 50 ~ 70%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
- 평가결과에 따라 부별(관리기금부, 조성기금부) 10% 차등지급

1.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적정성

□ 위탁관리 조직발전(OD) 및 조직활성화를 위해 노력

- 팀제 운영으로 의사결정시 상호 토의와 대화로 최적대안의 선택
- 농지관리기금 연찬회(研鑽會) 실시로 Communication의 원활화 및 문제해결능력 제고
 - 연찬회 실시 현황 및 발표내용
 - '95. 12. 20 : “농지조성비 고지·수납업무 전산장비 현대화” 등 3건
 - '96. 12. 30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자진납부제도 개선 방안” 등 3건
 - '98. 8.29, 12.29 (2회) :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환급업무 개선” 등 10건
 - '99. 12 .21 : “농지관리기금·운영 개선 방안” 등 3건
 - 실시효과
 - 업무중 발견된 문제점을 공론화 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동기 부여
 - 의사소통기법을 개발·발전시켜 조직 활성화에 기여
 - 상향식(Bottom-Up) 의사전달체계 구축

□ 능력수준에 맞는 인사관리로 인적자원(Human Resource)의 적재적소의 배치

- 학력수준 파악으로 업무 수행능력 Check
- 근속년수 파악으로 업무 수행능력 Check

2. 위탁관리 업무의 적정성

□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4229호. '90. 4. 7) 제정으로 기금위탁관리자 지정 ⇒ 농어촌진흥공사(농업기반공사)

- 위탁기관 선정 절차
 - '81. 3. 7 : 농지기금 설치
 - '86. 3. 5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발표
 - '90. 4. 7 : 농어촌정비사업의 전담조직인 농어촌진흥공사로 농지관리기금 위탁기관 지정
 - 2000. 1. 1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정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계속 수행

□ 위탁관리비 지급근거 및 집행기준 명문화로 관리비 지급의 엄격화 및 사회적 형평성 유지

- 지급근거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 집행기준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2조

3. 회계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 회계처리의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기금회계처리의 목적
 - 기금운용관리자(농림부) 및 위탁관리자 경영진에 기금운용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의 적기 제공
 - 외부고객에게 기금운용의 성과 공개로 기금사업의 유용성 확보
- 회계처리 확립 및 회계장부 비치로 회계처리의 명료성(Clarify) 확보
 - 비치장부 : 징수부,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수표발행부

□ 기금 회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회계처리의 신속·정확성 도모

○ “농지관리기금 회계정보시스템 구축”

<기대효과>

- 네트워크상 관계 직원간 자료공유 체계로 농지관리기금 관리자료의 검색기능 강화
- 결산자료의 체계적 이용으로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 “농지관리기금 증장기 운용계획 프로그램 개발”

<기대효과>

- 복잡한 계산과정을 단순화 하여 시간 및 인력절감
- 농지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운용방향 제시

○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GIRO 제도” 도입

<기대효과>

-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토록 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농지전용부담금 수익의 안정적 확보
- 농지조성사업 투자재원 확보로 기금 건실화에 기여

□ 농지관리기금 외부회계 감사 기능의 강화로 회계처리 감시기능의 달성

- 외부회계 감사기관 : 감사원, 국회,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단
- 감사원 회계감사 결과 회계처리 개선 실적
 - '91년도 : 금융기관 고수익 상품 예치등의 조치
 - '94년도 : · 규모화사업수수료 총액주의에 의거 회계처리 개선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개선
 - '96년도 : 기금의 건실화에 다각적 노력 추진

농지관리기금운용실적보고서

V . 자산관리평가

4. 1 기금자산 운용의 적정성	107
4. 1. 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107
4. 1. 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108

여 백

지표명**4.1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가중치****10점**

♣ 작성책임자 : 농림부 농지과 서기관 강상구 (☎ 02-503-7265)
 농업기반공사 관리기금부 2급 전철원 (☎0343-420-3225)

4.1.1 기금자산운용의 적정성**가중치****10점****1. 기금자산 운용정책의 적정성**

- 농지관리기금 자산의 특성과 「목표수익율제도」 운영
 - 농지관리기금은 당해년도중에 연간계획의 100%를 집행해야 하는 사업성 기금이고,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어려우므로 보유시재는 지불준비금 성격의 대기성 자금임
 - 제한된 운영 범위내에서 자금의 유동성 확보와 수익을 제고를 위하여 「목표수익율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적정유동성
 -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목표수익율 달성
 - '99실적 수익율 : 5.49%(목표수익율 : 5.43%)
- 운용자산 선정 및 적정배분 노력
 - 금융기관 선정근거 및 절차의 명문화(관련법령, 규정)와 투명성으로 금융기관간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 방지
 - 금리입찰, 이면계약 금지 등
 - 기금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기성 자금 운용
 - 금융기관 선정 : 농·수·축협 중앙회
 - 금융상품 선정
 - 7일 이내 운용자금 : 보통예금
 - 8일 이후 운용자금 : MMDA
 - 1개월이상 운용자금 : 정기예금

2. 자산운용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및 전문성

□ 의사결정체계 확립 및 명문화

○ 기본운영체계 법제화

- 근거법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금법시행령 제34조,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 제59조

- 기본운영방향

-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농업자금 공급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결정, 금융상품 선정등 여유자금 운영
- 수신기관의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금리입찰이나 이면계약 등의 금지

□ 금융기관의 자문 및 협의를 통한 자금운용

- 일자별 자금 소요시기와 자금 수지상황 및 보유금액의 변동상황을 매일 점검함으로써 보유기간별로 금융상품을 선택·운영
- 선택과정에서 금융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최고 수익율의 상품 선정
 - 농협, 축협, 수협중앙회

4.1.2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가중치
4점

2. 자금운용의 합리성

□ 기준수익율 책정·운영

- 기준수익율 : CD, 정기예금등 동일/유사한 금융상품의 연평균 이자율
- 목표수익율 : 기준수익율 - 요구불예금의 비율

□ 기준수익율과의 성과 차이 분석 →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95 ~ '99년도 실적수익율 분석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식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연간평균잔실적	연간평균잔실적	A	157,950	136,874	201,757	188,218	94,942
자산운용계획	이자수익계획	B	10,850	12,318	14,563	24,286	4,169
자산운용실적	이자수익실적	C	16,330	13,400	20,794	25,278	5,217
◦ 실적수익율	실적수익/평균잔	D=C/A	10.33	9.79	10.30	13.43	5.49
◦기준수익율	CD, 정기예금	E	11.45	9.51	10.55	11.50	5.75
실적대비	%	D/E	90.22	102.94	97.63	116.78	95.48
적정유동성	평균잔/365×20	5.48%	0.63	0.52	0.58	0.63	0.32
◦목표수익율	기준율-유동성	F	10.82	8.99	9.97	10.87	5.43
실적대비	%	D/F	95.47	108.90	103.31	123.55	101.10

※ 실적수익율 = 연간총수익/대기성자금의 연간 총평균 예금잔고

- 기준수익율은 대기성자금 전액을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하였을 때 수익 가능한 수익율임
- '98년도에 실적율이 116.78%로 초과된 것은 IMF 시대의 각 금융기관들의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예금유치 노력의 결과로 지나치게 높은 우대금리를 예금주에게 지불한 때문이며,
- '95년도에 수익율이 90.22%로 저조한 것은 국채발행시기와 상환시기의 불일치, 추석·연말사업비 소요자금 해당액의 요구불예금 관리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한데에 기인함
- '99년은 IMF의 여파로 예금평잔이 전년도의 50.4%에 불과하여 자금압박이 심하였으나, 운용의 효율성면에서 실적 수익율은 목표 수익율을 초과 달성하였음

2. 자금운용의 합리성

□ 금융기관 선정

- 농업자금 공급능력 확충을 위하여 농·수·축협에 자금 예치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34조
 -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농림부 훈령) 제58조
- 정부조직법 개편('98. 6. 해양부 신설)에 따라 수협과의 자금 거래 중단

□ 예금상품의 선정

- 대기성 자금(유동성) 확보와 예치이자 수익을 제고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금 수입·지출 일정계획의 철저한 관리
 - 유동성 자금 : 요구불(보통 또는 MMDA) 예금으로 예치
 - 1개월 이상 여유자금 : '98. 7월까지의 CD, 그 이후에는 CD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정기예금 예치 운용

□ 위험관리의 적정성

- 농·수·축협은 시중은행에 비하여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채권이 적고 위험관리 부담이 적음
 - IMF체제 하에서도 지불중단이나 이차지급 보류사례가 없었음